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(복지부)

1 상황 판단

◈ **3차 유행**이 **지속 감소세**이나, 금주 들어 일**시적 증가** 또는 **재확산 전환** 등

◈ 설 연휴 등 고려 시 **재확산을 가정한 방역 긴장도 유지가 필요한 시점**

◈ 다만, 장기간 운영제한, 집합금지를 겪고 있는 **생업시설들의 생계 곤란과 방역 수용성**도 고려해야 하는 **애로** 존재

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

① 2주간 설 연휴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 강화

○ **(모임·행사)** 전국 **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**

* 설 연휴를 포함하여 **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** (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)

○ **(여행자제)** 숙박시설의 **객실 수 2/3 이내 예약 제한** 및 객실 내 **정원 초과 금지**, 철도 승차권 **창가 좌석만 판매** 유지

○ **(설연휴)** 귀성·여행 자제, 휴게소 취식 금지, 온라인성묘 등 **설 특별방역대책**(1.15)을 차질없이 **시행**하여 **연휴기간 방역 긴장감 유지**

○ **(종교시설)** **종교 행사에 대한 방역 수칙 철저 준수 요청** 및 **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*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**

- 정규 종교시설 외에 **기도원,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**에 대한 **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 철저** (숙박, 식사, 소모임 금지)

○ **(요양병원·요양시설)** **종사자,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의무화**(요양병원·요양시설 주1회 이상) 및 **지속적인 점검·관리** 실시

○ **(선제검사유지)** 숨어있는 감염자의 **조기 발견**을 위해 **임시선별검사소**를 통한 **선제적 진단검사** 계속 유지

②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방역조치 우선 유지하되, 1주 뒤 재판단

< 완화 불가한 조치 >

- **거리두기 단계 조정**
- **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**
- **유흥시설 5종,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**
- **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·중단**
- **시설별 이용인원 제한**

○ (기간) ’21.2.1(월)~2.14(일) (2주간 적용)

○ (단계) **수도권 2.5단계 + 비수도권 2단계 유지**

* 2.5단계 유지에 따라 **지자체의 자율적 판단**에 의한 **단계 하향 불가**

- 모임 증가 및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, 2단계/2.5단계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**운영시간 제한**도 현행 **21시 기준 유지**

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>

구분	2.5단계	2단계	1.5단계
집합금지 시설	▲유흥시설 6종 (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	▲유흥시설 6종 (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	▲(해 제)
21시 이후 운영중단	▲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 독서실, 놀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 ▲방문판매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실내체육시설, 파티룸, 식당・카페(취식금지)	▲(운영시간 제한 해제) ▲방문판매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실내체육시설, 파티룸, 식당・카페(취식금지)	▲(해 제) ▲(해 제)
행사제한인원 (결혼·장례식)	▲50명 미만	▲100명 미만	▲500명 미만 ※ 초과시 지자체 신고·협의